

교통영향평가 등록기준에 관한 입법예고 관련

<시행규칙 소급적용의 부당성>

1. 금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부 규정(개정안 별표1 제2호 가목, 부칙 규정)은 기존 법령에 의한 대행기관 등록이 개정안에 의해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현행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여 지금까지 평온공연하게 국가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건전한 기술활동 의지를 꺾어 버리는 행위임.
2. 또한 일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지속적으로 대행업무를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다면 당초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취지 등과는 부합하지 않음.

<기술능력을 “자격”에만 한정하는 부당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의2에서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을 기술자격, 학력, 경력으로 다양화시킨 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1 제2호 가목에서는 기술자격(교통기술사 취득 후 2년이상 실무수행자 1명 이상 보유)으로 한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능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술자 자격, 학력, 경력 간의 사회적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개정안 의견>

따라서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필수기술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금번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칙에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